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2024.07.04

개정 2023.07.17

개정 2022.12.15

제정 2022.03.2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시행세칙 제17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회지 등 학술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3. 학회지에 게재된 우수논문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학술간행물 국제 우수 학술지명록 등재 추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위 호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및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부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촉한 편집이사 2인이 당연직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이 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활성화 및 학술간행물 발행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분과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업무분장)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의 업무 및 학회지 논문 모집, 투고논문 검토 및 심사 결과 통보, 게재판정, 지면 구성 등 학회지 발간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부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장의 업무 지원
2. 유사시 편집위원장의 직무 대행
3. 투고 논문의 적정성 검토 및 심사위원장 선정
4. 게재 확정 논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편집위원장이 요청하는 업무

③ 편집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고 논문 모집



2. 제2항 3호에 따른 심사위원의 선정, 논문의 게재여부 판정을 포함한 심사위원장 업무
3. 게재 확정 논문에 대한 자체검토

제5조(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중 국내거주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의결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 및 서면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회지 논문 접수 및 심사)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심사한다.

1. 학회지의 원고는 연구논문, 기술논문, 노트(기술보고), 레터 등을 포함하여 수시로 접수 받으며, 원고가 접수되면 개별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부편집위원장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접수가 완료된다. 단, 학회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등 학회지 논문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편집위원장의 직권으로 원고를 환송할 수 있다.
2. 접수가 완료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 접수가 완료된 논문은 반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의뢰 전 원고의 경우에는 저자의 요청 시 접수를 철회할 수 있다.
3. 부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편집분과위원장중에서 심사위원장을 선정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분과위원장 외의 심사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편집분과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은 위촉된 심사위원장에게 위임된다.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에게 논문 접수와 심사위원장 선정을 보고한다.
4. 심사위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저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 선정은 지양하며 저자에게 심사위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뢰받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거나 제시된 날까지 심사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때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은 저자와 개인적 친분 또는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심사의 편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받은 원고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엄정하게 심사하여 14일 이내에 <게재가능>, <소폭 수정 후 재심>, <대폭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심사의견서를 제출한다. 게재불가 판정시에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6. 저자는 본 학회 연구윤리 운영규정 제3조에 규정된 저자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부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가.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는 경우
 - 나.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다. 논문 내용이 매우 논리적이지 않거나 과학적이지 않은 경우
 - 라. 이외에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2인의 심사의견서를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판정하고, 모든 심사 결과는 저자에게 통보하며 심사결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 가. 심사결과 원고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14일 이내에 수정본 제출을 요청하며, 제시된 날까지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단 추가 실험 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장의 권한으로 최대 6개월까지 수정본 제출기한을 늦출 수 있다.
 - 나. 심사결과 원고의 수정 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14일 이내에 수정본 제출을 요청하며, 재 제출된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는 최대 2회 가능하다.
 - 다. 심사위원 2인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거나 부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8.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전 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하고 게재여부 판정 결과를 최종 승인한다.
9. 저자는 논문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저자의 재심 청구시 편집위원장은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10. 재심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해당 논문 분야의 전문가 4인으로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으며 재심위원회의 결과는 저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편집위원이 저자인 논문의 경우 논문 심사 및 게재여부 판정 과정에서 해당 편집위원이 참여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 편향성을 배제하여야 한다.
- 가. 편집위원장이 저자인 경우 논문 심사 및 게재 여부 판정 과정에서 편집위원장을 배제하고 부편집위원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 나. 부편집위원장이 저자인 경우 논문 심사 및 게재 여부 판정 과정에서 부편집위원장을 배제하고 편집위원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 다. 기타 편집위원(편집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이 저자인 경우 논문 심사 및 게재 여부 판정 과정에서 해당 편집위원을 배제한다.

제7조(학회지 게재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게재료를 면제하거나 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7월 04일부터 시행한다.

